

예 산 안 총 칙

제 1 조 200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총 계	212,647,503	6,379,425
1. 일 반 회 계	196,100,858	5,883,026
2. 특 별 회 계	16,546,645	496,399
기		
(1) 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	1,535,270	46,058
(2)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	618,617	18,559
(3)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	4,718,254	141,548
(4) 의 료 급 여 특 별 회 계	163,951	4,919
(5)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 별 회 계	2,104,960	63,149
(6)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	3,080,517	92,416
(7)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 별 회 계	344,039	10,321
(8) 피산청결고추상설직판장 특 별 회 계	573,444	17,203
(9) 농 공 단 지 관 리 특 별 회 계	233,964	7,019
(10) 주 차 장 운 영 특 별 회 계	194,440	5,833
(11)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특 별 회 계	2,747,702	82,431
(12) 기 반 시 설 특 별 회 계	231,487	6,945
타		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 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675,547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.